

제 633 호  
1977.12.3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
편집: 문화공보관 조용하  
전화 75-7834  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75-5444

# 시 보

## 차례

### ◎ 조례

제 1205 호 : 서울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	3
제 1206 호 : 서울특별회 계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	3
제 1207 호 : 서울특별시지 하월공체조례	4
제 1208 호 : 서울특별시 오불수거 수수로정수조례 중 개정조례	6
제 1209 호 :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	7
제 1210 호 : 서울특별시동명칭 및 구역화 정조 개정조례	9
제 1211 호 : 서울특별시예비조례 중 개정조례	10

### ◎ 규칙

제 1731 호 : 서울특별시지 하월공체조례 시행규칙	10 ( 이면 계속 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2410

◎ 고 시

제 461 호 : 도시계획시설 ( 학교도로 ) 지적승인	15
제 462 호 :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실시 계획 인가	15
제 463 호 : 도시계획 사업 ( 도로 ) 실시 계획인가	16

◎ 공 고

제 331 호 : 환지 예정지 일부변경 인가 및 지정공고	17
제 333 호 : 유료도로통행료징수공고	17
제 334 호 : 도시계획시설 ( 녹지 ) 실시 계획변경공람공고	18
제 335 호 : 환지 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	20
제 336 호 : 환지 계획변경공고	20
제 337 호 : 환지 계획변경공람공고	21
제 338 호 : 환지 계획변경공람공고	21
제 339 호 : 전기 용품제조업체허가취소	22
제 340 호 :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	22

◎ 사 령

23

## 조례

## 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205 호

## 서울교육원 설치조례증개정조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  
교육원설치조례증 개정조례를 이에  
공포한다.

1977.12.30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인

서울교육원 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 2조 (위치) 의 제 1, 2호를 다음과  
같이 한다.

1. 대성의 집: 경기도 가평군  
의서면 대성리 548 번지

2. 천마의 집: 경기도 양주군  
이금면 호평리 산 1번지의 1호

제 5조 (하부조직) 를 다음과 같이  
한다.

제 5조 (하부조직) ① 교육원에 서무  
과, 교무과, 지도과를 부속시설인  
기술사에는 사감을 둔다.

②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 
교무과장, 지도과장 및 사감은 장학  
관,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,  
교육연구사로 보한다.

제 6조 (경비부담) 중 "별표" 를  
다음과 같이 한다.

## "별표"

구 분	식비 (1인 1식당)	술박비 (1인 1식당)
국민학교 학생	200 원	200 원
중·고등학교 학생	309 원	250 원
교직원	309 원	300 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 
다만, 제 6조의 별표는 1978년 1월  
1일부터 적용한다.

## 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206 호

서울특별회계소관 증묘재산에  
관한조례증개정조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7.12.30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
교육감이 창감인

제 2조(중요재산의 범위) 중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전당 예상가격 1,000만원 이상의 재산, 다만 토지에 있어서는 1전당 500명 이상의 재산(예상가격 1,000만원이하 포함)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[인]  
1977년 12월 30일

#### 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207호

#####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

서울특별시지하철 공채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의

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(이하 "지하철공채"라 한다)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공채의 발행한도) 지하철공채의 발행총액은 지하철제 2호선 건설사업비의 2분의 1이내로 하되년도별 발행한도액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.

제 3조(공채의 매출방법) ①지하철공채는 무기명식증권으로 발행되며 공채의 권면금액은 5천원, 1만원, 5만원, 10만원, 100만원 5종 이내로 한다.

②지하철공채는 권면금액으로 면표에 개기하는 바에 의하여 매출한다.

제 4조(원금상환 및 이자지급) ①지하철공채는 원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까지 상환을 시작하여 5년에 걸쳐서 균등 상환한다.

②지하철공채의 이율은 연 10%이하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지하철공채의 이자는 제 1항의 원금상환시마다 이를 지급한다.

제 5조(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) 지하철공채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금고의 본점 및

제 633 호 시

1977.12.30 23-5

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다.

한다.

제 6 조 (국민주택재권 준용) 지하철  
공체의 이자재산방법, 매출일, 상환  
일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  
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  
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한  
국민주택재권에 관한 사항을 준용

제 7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 
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 
시행한다.

## 〈별 표〉 서울특별시지하철공체매출대상곳금액표

\* 1 건당 최저 매출금액은 5천원으로하고 매출금액에 5천원 단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5천단위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23-6 세·633호

시 브

1977.12.30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	서울특별시 오물수거·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12월 30일	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조례시행에 따른 2차 인상분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08 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증개정조례	

오 물 수 거 수 수 루 부 과 기 준

구 분	종 별	등 급	기 출	금 액		비 고
				1 차 인상 (78. 1. 1)	2 차 인상 (78. 3. 1)	
쓰	일반 가정 오물 (월액)		50평초과시 매 10평 까지	100원 가산	1100원 가산	
		1	30평 이상 50평 이하	300 "	300 "	
		2	20 " 30평 미만	250 "	250 "	
		3	15 " 20 "	200 "	200 "	
		4	10 " 15 "	100 "	100 "	
레	영업 오물 (월액)		5 10평 미만	50 "	50 "	
		1	30평 이상 50평 이하	1,500 "	2,000 "	오물외자가수거의무자와
		2	20 " 30평 미만	1,200 "	1,600 "	오물처리업자
		3	15 " 20 "	900 "	1,200 "	간의요율은
		4	10 " 15 "	750 "	1,000 "	실비 충당의법
		5	5 " 10 "	450 "	600 "	위내에서조정
기	다량오불 (50평초과 영업소)		6 5평 미만	300 "	400 "	허용할수있다 (단, 본요율 30% 이내)
			초과 1 톤마다	1,500 "	2,000 "	
분 높				18 ₩ 당	50 "	50 "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·구·자·군 [인]

77년 12월 30일

### ○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09 호

####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, 제 2 조 및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진료수가와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진료수가 및 약가기준 등)

(1)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 수가기준 및 약가기준에 의한다.

(2) 제 1 항의 진료법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별표에 열

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항의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기준에 의한다.

(3)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입원환자의 식사비는 당해년도 예산서상의 급식액에 1 할을 가산한다.

제 3 조 (징수시기) 제 2 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등은 이를 즉시 징수한다. 다만, 입원환자 및 병원장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1 항중 "별지 제 2 호 또는 제 3 호 서식"을 "별지 제 1 호 또는 2 호 서식"으로 한다.

별표 1 내지 3 을 삭제하고,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제 2 호 서식 및 제 3 호 서식을 각각 제 1 호서식 및 제 2 호서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3-8 제 633 호 시 보 1977.12.30

## 별표

## 기 본 진 료 료 점 수 표

( 1 점 = 10 원 )

분류번호	분 류	점 수	비 고
가 - 1	진찰권료	30	○ 기초진료료 ( 간단한 처치 및 처방 진료 포함 ) 는 진찰권료와 동시에 청구할 수 없고 진료행위가 이 루어 질 때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.
가 - 2	기초진료료	50	
가 - 1	입원실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안실료는 보호자 즉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3 일을 초과하여 강수 할 수 없다.</li> </ul>
	가. 복실	700	
	나. 1인실	500	
	다. 2인실	300	
	라. 3인실	200	
	마. 4-5인실	150	
	바. 6인실 이하	120	
	사. 영안실료	200	
가 - 5	제증명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증명 팔금수 수료는 이 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진료료와 동액으로 하고 별도의 검사를 요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검사료를 가산한다.</li> </ul>
	가. 병사용 진단서	100	
	나. 상해진단서	300 이상	
	다. 시체검안서	300	
	라. 시체부검표	2,000	
	바. 기발급증명사본 ( 1 건당 )	20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명동 및 구역획정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 [출]

1977년 12월 30일

○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10 호

서울특별시 동명동 및 구역획정  
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동명동 및 구역획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“별표”

강남구 도곡동 중 도곡동 산6번지들 기점으로 도곡동 산7번지 까지에 이르는 도로를 경유 남쪽으로 도곡동 36의3호에 이르는 25도로와 양재천

(좌표  $x = 443,841.22$   
 $y = 204,898.01$ )

$x = 443,731.81$      $x = 442,854.71$   
 $y = 204,626.81$      $y = 204,958.06$

: 점을

연결하는 도로 및 하천) 중심선의 동남 지역을 강남구 대치동에 편입한다.

강남구 개포동 중 308번지를 기점으로 도곡동 246번지에 이르는 계방축조된 양재천 (좌표

$x = 443,562.10$      $x = 442,338.72$

$y = 206,312.96$      $y = 204,275.70$

: 점을 연결하는 하천)

중심선의 이북 지역으로서  
도곡동 산7번지에서 도곡동 36의3호에 이르는 25도로와 양재천  
(좌표)  $x = 443,731.81$   
 $y = 204,626.81$

$x = 442,854.71$

$y = 204,958.06$

: 점을 연결하는 도로 및 하천)

중심선의 농족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에 편입하고, 서쪽 지역은 강남구 도곡동에 편입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여비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 [출]

1977년 12월 30일

23-10 제 633 호

시

보

1977.12.30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11 호

서울특별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 
서울특별시 여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 
이 지정한다.

제 3 조 중 "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 
별표 2 여비정액표에 따라"를 "국내  
여비규정( 대통령령 )의 별표 1 여비지  
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  
용하여"로 한다.

제 6 조 중 "별표 3 이전 비정액표에 의하  
여"를 "국내여비규정의 별표 3 이전  
비정액표를 준용하여"로 한다.  
별표 1, 별표 2, 별표, 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  
터 적용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체 조례 시  
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

1977년 12월 30일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31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체조례시행규칙  
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체 조례 시  
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절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  
시 지하철 공체 조례(이하 "조례"  
라한다)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 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제 2 조(공체의 조제) ① 지하철 공체  
승권은 매입 필증을 연결하여 조  
제한다.

② 승권의 번호에는 기호를 번호두  
에 권종별로 가(5,000원권)  
나(10,000원권) 다(50,000원  
권) 라(100,000원권)  
마(1,000,000원권)로 구분 기  
재하고 전송, 말미에는 권종구분  
없이 "가"로 기재한다.

제 3 조(공체승권 및 매입필증 기재  
사항) ① 공체승권에는 다음 자  
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이 날  
인하여야 한다.

1. 공체의 명칭, 번호, 액면 금액 및 이율	5. 매입 대상자
2.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	제 7 조 (공체매출기준) ①조례 제 2
3. 공체 매출점 및 매출일	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체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 소재 한
②매입월중에는 공체의 금액과 번 호, 매입자성명, 용도, 장구기관, 매 출점 및 매출일을 기재한다.	국상업은행(본, 지점 및 예금 취급 소)을 포함한다. 이하 "매출점"이 라한다. 이하 같다) 및 시장이 지 정하는 은행에서 매출한다.
제 4 조 (공체증권의 관리) ①공체증 권의 보관 및 관리는 시장(지하 철 본부장)이 관리한다.	②공체 매출점에서는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(시금고과)으로부터 소요 공체를 수시로 인출받아 이를 공체 매입자에 매출한다.
②시장(지하철본부장)은 공체증권 을 매출은행 총괄점에 공체의 보 관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	제 5 조 (공체증권 관인의 효력) 공 체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공체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 한다.
제 2 절 매출업무	제 5 조 (공체의 매출일) 공체의 매 출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날의 말 일로 한다. 단, 실제 매출일로 부 터 매출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금된다.
제 6 조 (공체매출공고) 공체를 매출 헤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.	제 9 조 (매입월중의 장구 기관) ①시장(수증장소장, 사업소장을 포 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조례 별 표에서 제기한 공체 매입자로 부 터 관계서류 접수시에 매입월중을 장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1. 공체의 명칭, 매출방법, 총액, 권종별 액면금액, 이율	②전항에 의하여 장구한 매입월중 은 소연하여 제사동을 하지 못하도 록 한다.
2. 매출점, 장소	
3.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	
4. 매출 기한	

<p>제 10 조 (공채증권의 보증 기재) 공채와 매입월증을 발행할 경우에는 매출 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증기재 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공채증권</p> <p>가. 매출년도</p> <p>나. 발행일 및 상환일</p> <p>다. 매출점</p> <p>라. 실제 매출일</p> <p>2. 매입월증</p> <p>가. 매입자 성명</p> <p>나. 충도</p> <p>다. 정부기관</p> <p>라. 매출일</p> <p>마. 매출점</p> <p>제 11 조 (공채 원부의 작성 비치)</p> <p>시장은 조례,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기관으로부터 받은 매출상황 보고에 의하여 공채원부를 작성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권종</p> <p>2. 공채의 번호, 액면금액, 이율, 매출일</p> <p>3. 원리금 상환일</p> <p>4. 매입월증 기재 사항</p> <p>제 12 조 (기재사항의 정정금지) ① 공</p>	<p>채와 매입월증의 기재 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.</p> <p>② 공채와 매입월증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단. 시장이 공채이면의 발행 조건의 변경으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제 13 조 (공채의 매출 상황 보고)</p> <p>(1)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장 (시금고과)은 매출점에서 매출한 공채 (원리금 상환율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수합하여 매출일로 부터 2 일째 되는 오전 12 시까지 일보로써 시장 (지하철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(2) 시장은 공채 매출일보에 의하여 공채 발행원부를 정리한다.</p> <p>제 14 조 (매출내금관리)</p> <p>① 시장은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장으로부터 받은 공채 매출일보를 즉시 지하철 운수사업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징수관은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공채 매출 대금을 세입금으로 수납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5 조 (공채매입면제) 국민주택 채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권의 매입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체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### 제 3 절 상 환 업 무

제 16 조 (원리금상환) ①공체원금의 상환일은 조례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 해당일로 한다.

②공체이자는 매출일의 이율로 거치기간의 이자는 1년 단위부터 계산하여 원금 1차 상환과 동시에 이자금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년리로 계산하여 매년 원금과 같이 계산한다.

③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17 조 (원리금 상환장소) 공체의 원리금 상환은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상업은행 본점점 및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상환한다.

제 18 조 (공체의 중도상환) 공체는 중도에서 상환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당해 범허, 인가, 상수도 등 수신규신청 또는 전설공사 도급계약이 행정 기관에 의하여 철회 되거나 등록의 신청이 기각, 반려 각하 또는 철회서 그 사무를 취급한 기관이 사실증명을 발급

한 경우

2. 착오로 인하여 공체매입자가 아닌자가 매입 하였거나 소정의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과도 매입한데 그 사무를 취급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즉시 차우사실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당해 매입월승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경우

제 19 조 (공체상환 공고) 공체원금의 상환은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.

### 제 4 절 보 치

제 20 조 (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) ①공체 및 대입월승의 분실, 도난, 멸실, 대손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체 및 매입월승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.

②전항의 공체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부효로 할 수 있다.

③제 1 항의 공체권자는 법원의 재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21 조 (중권의 보존기간) 공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.

23-14 제 633 호

시

보 1977.12.30

구 분	내 용	보 존 기 간
1. 전양공채	완성된 공채로서 "전양"이라는 문자가 표시된 공채	공채매출마감일로부터 2년
2. 미발행공채	완성된 공채로서 매출년도, 매출일 및 상환일을 보충 기재하고 매출책임자와 기명, 직인, 날인, 하면 매출할 수 있는 공채	,
3. 상환공채	상환을 위한 공채	상환일로부터 2년
4. 불용공채	형식 전환공채, 서손공채와 기타 사유로 사용불가능한 공채	불용된 날로부터 6월

제 22 조 (공채증권의 처분) ① 시장은 전조의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을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 (시금고과)으로부터 인수하여 처분한다. ② 공채증권 처분방법은 소각, 유통 또는 기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.	공채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 과정에서 야기되는 재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공채 매출업무에 대한 확인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제 23 조 (원리금 청구권의 시효) 공채의 원리금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.	제 25 조 (업무취급요령)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취급 요령으로 정한다.
제 24 조 (공채매출업무 감독) 시장은	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고 시

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1 호  
도시계획시설(학교도로)  
지적승인

1. 동대문 구청관내 도시계획 시설  
(학교 및 도로)가 서고시 제  
439호 (77.12.19)로 결정되었  
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

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 (77.

3.16) 권한·위임에 따라 이를  
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경  
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 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
보이게 합니다.

## 가. 학교지적승인 내역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m)	비고
신설	군자국민학교	동대문구 장안동	237-15	13,934
"	이문 "	동대문구 이문동	164-26	15,550
"	전농 "	동대문구 전농동	32-11	16,364
"	종암 "	동대문구 용두동	192-	16,473
"	홍농 "	동대문구 청량리동	산 1-142	14,876
"	목동 "	동대문구 중화동	277 ~ 1	12,218

## 나. 도로 지적승인 내역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시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3		6	105	중화동 280-7	중화 280-7	목동국교내
변경	"	3		6	105	중화동 280-7	중화 280-7	도로폐지

1977.12

서울특별시장

⑦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2 호  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  
설시계획인가

1. 서공고 제 307(77.12.1)호로  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

고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39  
번지 일대 청량국민학교앞도로  
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  
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  
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(77.3.16)

23-16 제633호 시 보 1977.12.30

<p>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토목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7.12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 울 특 별 시 장</p> <p>1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이문동 339-20-341 - 1 번지간</p> <p>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개설)</p> <p>명칭 : 청량국민학교앞도로개설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 : B = 3 M L = 225 M 도로개설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동대문구청장)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77.8 - 78.6.30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 및 건물 : 별첨조서 (생략)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. 성명 별첨조서 (생략)</p> <hr/> <p>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3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</p> <p>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 (62.12.8)</p>	<p>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 제26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 (77.3.16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</p> <p>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.</p> <p>3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12.31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 울 특 별 시 장</p> 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동대문구 제기동 712번지 - 제기동 137, 177번지.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흥파국교 - 고대 앞간 도로개설공사</p> <p>3. 사업규모 : [폭 = 25m] 연장 = 452m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1977.12.16 ~ 1978.12.30.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한 재산의 소재지 : 별첨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 토지조서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공 고

## 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1 호

환지에 경지 일부 변경인가  
및 지정 공고

1. 서울특별시 김포 토지 구획정리  
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  
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  
고 제 306 호 (77.12.7) 를 공고  
한바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 
의견서 제출이 없기 토지구획정리  
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 위  
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 
조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동법  
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에 경  
지로 지정하였기 이에 공고 합니  
다.

2. 환지에 경지 지정서 및 도면은  
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 
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 
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3. 조세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 
통보할 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지 소  
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 
찰을 합니다.

1977. 12.

서울특별시장

## 다 음

가. 사업명 :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 
나. 변경위치 : 257 구획과 251 구획  
사이도로 (B=8m L=41.5m)  
251 구획과 236 구획 사이도로  
(B=6m L=42m)

다. 변경도서 : 청락 (도시정비국 구획  
정리과 비치)

## 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3 호

유료도로 통행로 징수 공고

서울특별시 관내 유료도로 (강변  
로) 통행로 징수 기간을 연장하였기  
유료도로법 제 10 조 및 동시행령  
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 
이 공고한다.

1977. 12.

서울특별시장 구자 출

1. 통행로의 징수자 : 서울특별시 +

2. 유료도로의 구간 .

자. 성동구 금호동 4가 2-1

지. 성동구 성수동 1가 693

3. 통행로의 징수기간

현행 71. 1. 1-77.12.31

변경후 71. 1. 1-83.12.31

23-18 제 633 호 시

보 1977.12.30

## 4. 통행로의 징수대상과 그 금액

대상	
2.3 톤 차	50 원
승용차, 버스, 화물차	100 원
특수차(10 톤 이상 화물 차 포함)	200 원

## 5. 통행로의 면제 받는 차량

- 가. 군용 및 군 작전용 차량
  - 나.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
  - 다. 교통 단속 차량
  - 라.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종사하는 차량
  - 마. 채신관서에서 우편 및 공중전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
  - 바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회의장, 대법원장 및 국빈으로서 외국사절과 그 경호용 차량
  - 사. 검찰, 경찰, 기타 수사기관의 법적 수사용 차량
6. 통행로의 징수 방법  
현금 또는 회수권으로 요금소에서 징수

## 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4 호

도시계획시설(녹지) 실시 계획  
변경 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 호(76.3.24.)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(특수녹지대) 건설공사 구내 저축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에 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2 호(76.7.27.) 공고 사항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12.30

서울특별시장

## 변경 공람개요

1. 사업 시행의 위치: 마포구 성산동 산 53-7 의 98 필지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: 도시계획사업, 특수녹지대
3. 사업의 규모:
  - 일 지 963.894 m<sup>2</sup>
  - 1차 조성 면적 225.077 m<sup>2</sup>
4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제 633호 시 보 1977.12.30 23-19

5. 사업차수 및 준공예정일

구 분	당 초	년 경	비 고
착 공	76.8.15	76.8.25	
준 공	77.8.31	78.8.31	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별첨 토지 조서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주소,

설명: 다음

토지 세목 및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조서

77.1.20 현 재

일련 번호	원 지 번	수 용 면 적	소 유 자 or 관 계 인 주 소 성 명	비 고
1	마포구청산 동 산 53-7 야	정 마포구 5.5115 상선동 53-12 " 산 53-7 " 산 53-13 " 산 53-18	4,476 평 2,168 " " " 136 "	소로 광수시호남농 저 23 유당 증수동부로 이은용 제일 은행산 53-12 (주)
2	" 산 55	0.0300 " 455	90 " 소유 개성부	김 시 선 소재물명
3	상암동 산 4-15	0.6302 상암동 산 4-15 " 산 4-15	60 평 183.2 "	국(국예청)
4	" 산 4-19	0.1004 좌 동	좌 동	"
5	" 산 4-24	1.891 " 산 4-192 " 산 4-24	508 평 5,173 "	"
6	" 산 4-63	0.0139 좌 동	좌 동	김전희 대장
7	" 산 4-64	0.0524 "	" "	"
8	" 산 4-147	0.0073 "	" "	"
9	" 산 4-97	0.0468 "	" "	국(국예청)
10	" 산 4-176	0.3406 "	" "	"
* 이 하 생 래				

23-20 제 633 호

보

1977.12.30.

## ⑤ 서울특별 지공고제 335 호

##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 공고

- 서울특별시 장안평 지구 및 영농주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 제 33 조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.
-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서류 송달은 별도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가음합니다.

1977. 12. 30

서울특별시장

## 공 람 개 요

- 사업명 : 장안평 지구 및 영농 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
- 변경지역 : 서울특별시 농대문구 장안농 일부 토지

성동구 군자동  
관악구 밤배동

3. 변경조서 및 도면 : 생략 (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)

## ⑥ 서울특별 시공고제 386 호

## 환지계획 변경 공고

-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.
- 환지계획 변경조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것이나, 미수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알음 합니다.

1977. 12.

서울특별시장

제 633 호

시

보

1977.12.30

23-21

( 환지 변경 내용 )

가. 사업명 :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  
    업지구 변경

나. 변경면적 : 5,709.4 평

다. 변경위치 : 1) 강남구 삼성동 5의

    60호 107 평지

    2) 67 구획 중학교용지

    ( 5,150 평 )

라. 유의사항 : 서울특별시 고시 제

    417호에 의거 ( 77.11.29 ) 삼성동

    5의 60호의 107 평지에 학교용지로

    추가 시설경정되고 67 구획중학교

    용지가 폐지됨에 따라 환지계획을

    변경하게 되었음.

끝.

3. 본 공고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.

1977. 12.

서 울 특 별 시 장

( 환지 계획 변경 내역 )

가. 사업명 : 영농 제 2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9655.1 평
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삼성동 산 41 의

    45 호의 84 평지

⑤ 서 울 특 별 시 공 고 제 338 호

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⑥ 서 울 특 별 시 공 고 제 337 호

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1. 영농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
    업지구내 환지예정지 ( 아파트지구 )  
    중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  
    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 
    환  
    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 
    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
    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.

2.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 
    구획정리과에 배치하고 토지 소유자  
    기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. 영동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
    구내 환지예정지 ( 아파트지구 ) 중 일부  
    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 
    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 
    변경코자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 
    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 
    공람에 공합니다.

2.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 
    구획정리과에 배치하고 토지 소유자  
    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3. 본 공고 내용을 토지 소유자 및  
    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

23-22 제 633 호 시 보 1977.12.30.

할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1977. 12.

서 울 특 별 시 장

(화자 제작 변경 내역)

가. 사업명 : 영농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30,900 평
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서초동 52의 2호  
의 135 필지

◎서 울 특 별 시 공고 제 339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,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7. 12. 30

서 울 특 별 시 장

다

음

업체명	대표자	허가번호	소재지	허가일	제조구분	취소사유
유진공업사	백무부	1-6-31	성동구 성수동	77.6.3	전동기류	법정기간
		1-8-68	"	"	전동력·용 기계기구류	내형식승 인 미취득

◎서 울 특 별 시 공고 제 340 호

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KS(한국공업 규격) 표시정지처분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 규칙 제21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77. 12.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허가번호 : 885

2. 허가일자 : 73.12.26

3. 제조업체명 :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

4. 대표자 : 장영신

5. 소재지 : 영등포구 구로동 501

6. 규격번호 : 5317

7. 품명 : 조합페인트 담색 3종

8. 처분일자 : 77.9.6

9. 해제일자 : 77.12.30

제 633 호

시

1977.12.30 23-23

사령

◎ 1977.12.30

강원도  
지방행정사무관

원세훈
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
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.

◎ 1978.1.1

연로시험소  
지방행정주사

김상열

연로시험소장 직무대리를 연함.

종로구  
지방행정주사  
하전철

종로구 민방위과장 직무대리를  
면함.

문화공보관  
지방행정주사보  
임준태

조달청 전출을 명함.

서울특별시장